

제25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귀농·귀촌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

2016. 4. 14.

임실군의회의회장

## 1. 개정이유

- 귀농·귀촌인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에 효율을 기하고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귀농자 지원기준 (안 제2조)

- 지원나이 : 나이 제한없음
- 타지역 거주기간 : 1년 이상

나. 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4조)

다. 사업비 지원 대상(안 제7조)

라.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안 제9조)

##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협의

다. 협의 등

- 1)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의견반영(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3. 7. ~ 2016. 3. 28)결과 : 우수귀농인 선정 및 지원 추가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임실군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이란 나이에 제한없이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임실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귀농인”이라 한다.
2. “귀촌”이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임실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농업인·어업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귀촌인”이라 한다.
3.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임실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적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 제2장 귀농·귀촌인 지원체계

**제3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운영비 지원, 사업위탁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인적네트워크 관리
3. 그 밖의 귀농·귀촌인 조기정착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4조(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정책과장, 축산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 임직원

다.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라.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귀촌인 단체 임직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촉직 위원 중 특정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자격으로 위원이 된 자가 해당 대표 또는 임직원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위원 직위에서 해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지원신청자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지원결정
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경우 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소득사업 및 농지구입자금 등 융자지원
2. 귀농인의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보조지원
3.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비 지원
4. 귀농·귀촌인의 주택구입·신축·수리비 보조지원

5. 귀농인의 정착금 보조지원

6.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수가 제안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사업 지원

2. 귀농·귀촌인 멘토지원단 지원

3.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조성 지원

4. 귀농·귀촌 우수마을 지원

5.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조성 지원

③ 군수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 귀농인으로 선정하고 포상 및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임실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후 보조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귀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가족과 함께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귀농인의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귀농인이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단, 실제 농업에

도 같이 종사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6.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존속 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귀농귀촌 사업 지원(안 제7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 2016년 : 985,800천원
- 2017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 5,861,200천원

## 3. 재원조달방안

- 2016년 본예산(군비) 반영

## 4. 작성자 : 농업정책과장 이남재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출	985,800	1,862,800	1,332,800	1,332,800	1,332,800	6,847,000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지원	3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300,000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비지원	48,000	50,000	50,000	50,000	50,000	248,000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지원	125,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25,000
정착금 보조지원	1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80,000
귀농 귀촌인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귀농귀촌인 멘토지원단 운영지원	28,800	28,800	28,800	28,800	28,800	144,000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조성	144,000	144,000	144,000	144,000	144,000	720,000
귀농·귀촌 우수마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조성		530,000				530,000

**의 견 제 출 서**

조 례 안	<b>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b>	
의 견	<b>관 련 조 문</b>	<b>의 견 사 항</b>
	<p>□ 제7조(사업의 지원)  → ③항 신설</p> <p>③ 군수는 전문적인 농어업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 귀농인으로 선정하고 포상 및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 제7조 ③항 신설 필요  : 선도 귀농 모범 농가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임실 농업의 발전 및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p> <p>※ 관련 근거  「귀농아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기 타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3월 24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단체명 : 임실군귀농귀촌협의회  대 표 : 김**</p> <p><b>임실군수 귀하</b></p>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전북임실016			
정책명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명	송윤희	전화번호	063-640-242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3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농업정책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개선안 제4조(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u>다만,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성별을 고려한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였음.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3월 24일  <b>주 민 복 지 과 장</b> (담당자/연락번호 : 윤진/063-640-2123)  농업정책과장 귀하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실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농어업인의 기준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귀농"이라 함은 만 65세 이하의 자 중 임실군 이외 타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임실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귀촌"이라 함은 임실군 이외 타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임실군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한 것을 말하며, 농업인·어업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귀농과 구분한다.
5. "지원"이라 함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적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 제2장 귀농·귀촌인 지원체계

제3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지원, 운영비지원, 사업위탁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인적네트워크 관리
3. 그 밖의 귀농·귀촌인 조기정착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4조(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정책과장, 축산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 2. 위촉직 위원

### 가. 군의회 의원

#### 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 임직원

#### 다.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 라.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귀촌인 단체 임직원

####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인 경우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지원신청자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지원결정
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경우 가구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소득사업 및 농지구입자금 등 융자지원
2. 귀농인의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보조지원

3.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 보조지원
  4. 귀농·귀촌인의 주택매입·신축·수리비 보조지원
  5.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수가 제안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후 보조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귀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가족과 함께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귀농인의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귀농인이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단, 실제 농업에도 같이 종사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6.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